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3. 4. 1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14:00~16:0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64호 및 제65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64호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6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영업양수도 승인요건 정비와 관련해서는 ‘인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업양수도 승인시’ 이 의미가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본점으로 바꾸거나 현지법인을 지점으로 바꿀 때 새로운 법인(entity)을 세우면 기존에 있는 법인(entity)에서 그 영업을 양수도 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한다는 건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증선위 심의사항 정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지배구조법으로 간 인허가나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여전히 이 설치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증선위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궤(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지?

- (보고자) 맞음. 지금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증선위의 심의의결사항 중에 하나로 금소법 위반도 넣는 것임.

- (위원)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 투자매매업 인가 외에 위·수탁 업무가 업무의 성질로 보면 투자매매업의 업무위탁과 과생결합증권 투자중개업의 성격을 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업무 위·수탁은 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가진 자한테만 위·수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수탁으로 처리해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인지?

- (보고자) 맞음. 당연히 투자매매업을 가진 자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또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런 내부통제기준에 이것과 관련된 위·수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위·수탁 회사들이 각자 규정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것임.
- (위원) 마지막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투자자보호 이슈(issue)가 있을 텐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음.
- (보고자) 규정상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내부통제기준에 넣도록 해서 일단은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저희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금투협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넣고 실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되도록 조치하겠음.
- (위원) 탄소배출권의 위험 값을 32%에서 18%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위험 값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 (보고자) 위험 값이라는 것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해당 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음. 탄소배출권을 지금까지

별도로 위험 값 산정 대상의 카테고리(category)로 넣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가 되어서 32%라는 가장 높은 것으로 적용되어 왔었는데, 탄소배출권의 실질을 보면 사실상 어떤 금융상품 또는 에너지, 날씨 이런 것들과 관련된 상품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이라는 카테고리(category)에 넣어서 18%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현행 NCR비율이라고 하는 자본건전성 평가기준에 따라서 위험 값이 산정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투자하는 것에 따른 위험 값이 더 적게 잡혀서 좀 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위원)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 ELS에 한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DLS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DLS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DLS는 상품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상품이 많고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66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필요인력들을 투자권유자문(12명), 장외파생후선(2명)으로 기타 이해상충부서와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서에서 이동을 하면 그것이 이해상충부서와의 분리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림.

- (보고자) 부서간의 정보차단벽(Firewall)이 있어 그것이 잘 지켜지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직원이 A라는 부서에 있다가 B라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국내시장 거래할 때는 장내파생에 한해서 매매·중개 업무만 영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회사의 요청사항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IBK투자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주)이 장내·장외 파생상

품업무를 한다고 해서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림. 장내파생이나 장외파생에 대해서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당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 CFD 같은 경우에도 최저증거금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0%까지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판매하는 것이 좋은 수단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volume)이라든지, 특정 증권사에 의한 쏠림 리스크라든지, 거래상대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그래서 인가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갖출지에 대한 부분을 금감원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대부분 증거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제거되었다고 보임. 다만, 이런 거래와 관련해서 투자자보호 이슈(issue)가 있어서 현재 금융위·금감원·협회가 투자자교육이라든가 사전모의거래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위원) 투자자보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위험이 큰 부분들이니까 감독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음.
- (위원) 이 CFD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 (보고자) CFD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이 됐을 때 이런 레버리지를 최대 10배까지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 보니까 2020년말에는 거래잔액이 한 4.8조 원, 2021년말에는 5.4조 원까지 높아졌었음. 그런데 이후에 2022년에 주가조정을 받으면서 작년 말 기준에서는 시장 규모가 한 2.3조 원 정도 되고, 2021년 10월부터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10배에서 2.5배 정도로 감소가 됐음. 전문투자자라고는 하지만 개인들한테도 많이 이용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2021년말부터는 레버리지도 많이 낮춰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음.

○ (위원) 법인 상대로 하거나 전문투자자 상대로 할 때 이런 것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니까 혹시 과당경쟁을 하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는 말씀이고, 공급측면(side)에서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임.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드는 판매사가 헷지(hedge)할 때 쏠림들이 있고 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여 전체적으로 잘 감독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림.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부국증권(주)의 부국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 『(주)OOOOO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 사건은 (주)OOOOO의 대주주였던 ●●●이 주식매수자금을 지인들한테 대여를 하고 (주)OOOOO의 주식을 사도록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했던 사건임.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주)OOOOO의 임원들이 ●●●의 차명주식의 실질주주 여부를 잘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처분을 예고했음. 그런데 저희 의견은 (주)OOOOO의 대표이사과 대주주였던 ●●●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임.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음. 첫 번째로는 행정절차법상 문제점이 있음.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액수의 산출 근거와 이유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 (주)OOOOO는 2022년 \*\*월 \*\*일 최대주주 허위공시를 이유로 벌점 \*\*점과 제재금 \*\*\*\*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 이것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터 부과를 받았고, 사실상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제재금과 벌점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처분이라는 것이 저희 주장임. 세 번째는 '수사기관 통보'의 위법성임. (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남부검찰청에 진정 제기를 했고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했음. 이 사건 처분으로 '수사기관 통보'가 된다면 강남경찰서 조사에서 공모관계가 있다는 예단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수사기관 통보'는 위법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 (위원) ●●●씨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겉으로 보기에 보유주식을 전부 매도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영상황을 주1회 보고하고 월 급여를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 ▶ (진술인) ●●●씨는 이 회사 설립자였고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인의 전재산을 (주)○○○○○ 운영자금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고, 담보제공이나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가끔씩 보고받고 확인(check)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리고 아까 한국거래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조항에 보면 법원, 검찰 이렇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행정기관인지?

- ▶ (진술인)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리고 증선위가 조치예정사실을 통보할 경우 수사기관에 예단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선위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예단을 줄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 ▶ (진술인) 당연히 검토는 하실 수 있는데 '수사기관 통보'는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임.
- (위원)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지?
- ▶ (진술인) 인정함.
- (위원) 그렇지만 회사나 대표는 알지 못했다는 말씀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 대표님께 여쭙보겠음.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식 취득 자금이 ●●●●씨 자금이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지?
- ▶ (진술인) 나중에 알게 되었음.
- (위원) 2017년 6월14일에 법원에서 △△△등이 보유한 주식은 ●●●●의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 대표님께서서는 확인하셨던 사항인지?

▶ (진술인) 그때는 제가 이런 내용에 관여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내용들이 전혀 아님.

- (참여자) 그러면 ●●●씨 주식을 사는 것인데 자금이 ●●●씨 것이면 이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지? 이런 상황이면 구조 자체가 차명주식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는지?

▶ (진술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 출처만으로는 차명주식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음.

- (참여자) 그 말씀은 맞는데 자금출처가 차명주식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분의 명의신탁 주식이 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동기가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경영권분쟁 상황에서 치열한 쟁점이 있었는지?

- (보고자) 2014년 2월에 회사 횡령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횡령의 규모가 57억 원 정도로 자기자금의 14%정도였음. 이 횡령사건 이후로 주가가 급하락 하면서 (주)□□를 중심으로 회사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음.

○ (위원) ●●●씨가 형식적으로는 이사를 사임했지만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다 관여하고 했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는지?

- (보고자) 보통 지분을 전부 팔고 최대주주가 아닌 자, 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는다는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음.
- (위원) 이 경우에는 주식매매로 가장된 이 명의신탁거래를 어느 분이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는지?
- (보고자) 회사의 ○○○라는 사람이 이 실무를 담당하였고, 매매주문을 도와줬음.
- (위원) 그분은 회사 어느 부서의 어느 직위에 있는 분인지?
- (보고자) ●●●의 집사 역할을 하였고 현재는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임.
- (위원) 그분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 (보고자) 2014년도에는 공시신고업무 담당이사로 되어 있었음.
- (보고자) 이 건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 6월에 (주)□□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2심 결과가 2018년 2월에 나왔음. 그것이 2016년말 기준으로 누가 최대주주였느냐는 것을 묻는 소송제기에 따른 가처분결과인데, 그때 재판부가 명확히 505만주를 ●●●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을 했음. 그것이 회사한테도 당연히 통보가 갔고,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혀 보지 않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함.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 전에 진술한 변호인과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위원) 말씀하신 가치분도 회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입장에서 그 소송의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하여 다른 의견 없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0호 『(주)케이티알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동종 업계에서도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사한 회계처리를 수행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 (보고자) 회사 주장을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주요 투자배급사 같은 곳을 말하는데, 이런 곳은 총제작비의 50% 정도를 투자하고 영화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고 있고, 회사도 이런 역할을 한 경우에는 개봉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었음.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오너십(ownership)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OTT 플랫폼에 1건을 투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유동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부분이며, 회사가 말하는 '동종업계'라는 것은 앞서 설명 드린 주요 투자배급사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1호 『삼화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의결안건 제72호 『정진세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의결안건 제73호 『진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의결안건 제74호 『태성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의결안건 제75호 『선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의결안건 제76호 『회계법인 세일원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처리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4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77호 『마스틴투자운용(주)의 마스틴파트너스(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